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62192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62192 판결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소2213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문아라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3. 8. 30.

판결 선고2023. 10. 1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소2213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계약상 당사자임을 전제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였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사로서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20. 6. 23. 피고와 사이에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17세대를 한 세대 당 5백만 원 씩 총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계하기로 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2020. 6. 24.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설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1. 계약 건명: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용인시 수지구 E 일원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약 4,790.00m² (1,448.98평)

2) 용도: 주택(17개동)

3) 층수: 지하 1층~지상 2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5) 연면적의 합계: 약 110.00 X 17세대 = 약 1,870.00m² (565.68평)

4. 계약금액: 세대당/5,000,000원 X 17세대 = 85,000,000원 (일금 팔천오백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단, 사업진행상 세대수 변경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은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구조물에 의한 옹벽 안전성 검토 등)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용역 계약 시	12%	1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허가 접수 시	47%	40,000,000	
건축허가 완료 시	41%	35,000,000	
계		85,000,000	

제6조(보수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하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4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6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라. D은 2020. 9. 1.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20. 9. 22. 피고에게 2020. 9. 25.까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기 지급한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D은 2023. 8. 22.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양도할 채권을 "채권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위 채권은 양도인이 B에 대하여 가지는 2020년 6월 23.일자 건축물 설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임(계약 건명: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여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3. 8. 2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3. 8. 25.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의 성실의무 약정을 위반하여 설계업무 이행을 지체하고 원고의 독촉에도 원고의 설계 요구안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허가땡 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하지도 않은 사유를 들어 부당한 추가 보수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이 사건 설계계약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타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20. 9. 1. 피고에게 해제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기 지급한 1,000만 원 및 금전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부당한 설계 지연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건축 허가일정과 결부된 대출일정 및 잔금일정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건축사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20. 9. 1. 원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D이 당사자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3. 8. 22. D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으로서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D 개인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20. 7. 16.과 2020. 8. 24.에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D의 메일로 전송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D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20. 9. 1. D과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합의해제한 적이 없으므로, 합의해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 개인임에도,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피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처분문서인 이 사건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계약상대방인 건축주(갑)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D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D이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는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원고의 상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4) D이 2020. 9. 1. 피고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거나 자신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D이 2023. 8. 22. 원고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 양도사실 통지서가 2023. 8.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설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직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이 법원에 이르러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던 채권 전부를 D이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인데, D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D은 양수인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D이 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던 원고가 소송 진행 도중 갑자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판사김순한

판사박현이

판사김지영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예비적으로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목적소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추가한 해제의 원인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을 새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